

1.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2. 주요내용

-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고충 등 상담·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체력단련실·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를 "청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본문 중 "규정은 소방청사"를 "훈령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로, "119안전센터"를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건축자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119감염관리실"을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업무를""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로, "119종합상황실"을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3"을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업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함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화재조사분석실"을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정비실"을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함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충전실"을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HOT ZONE 또는 RED"를 "RED"로, "개인안전장비"를 "개인보호장비"로, "제독"을 "제독(除毒)"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TRANSITION ZONE 또는 YELLOW"를 "YELLOW"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COLD ZONE 또는 GREEN"를 "GREEN"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연배기 차고지"란 차고지의 2면 이상이 개방 가능하여 매연 및 유해가스의 잔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15m 이상의 도로폭"을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2m"를 "12 m"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차고와 사무(행정)공간"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현장대원"을 "소방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를 "배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을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사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사무실"을 "사무(행정)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동대기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를 "출동대기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가급적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바닥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제9조제5항 중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을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리·고충·비위신고 등 상담·진료(비대면 포함)에 사용하는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⑦ 소방청사 내 화장실은 남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10조제5항 중 "정비실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비실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한다(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청사의 차"를 "차"로, "인접도로와"를 "인접도로의"로,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사의 차고는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사무실"을 "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정)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청사의 차"를 "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원"을 "소방대원"으로, "1m"를 "1 m"로, "2m"를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⑤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황실은 시·도 본부 119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은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실"을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공조·비상발전시설 등 119

종합상황실의 원활한"을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공기
조화설비·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황실"을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
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
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원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세탁·건조실"을 "세탁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주출입구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주출입구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을 "휠체
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오염구역과 안전구
역"을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공조
시설이"를 "공기조화설비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차장법」 및
해당 자치단체"를 "「주차장법」 및 해당 시·도"로, "설치한다(다만, 소

방청사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도록 한다.

⑧ 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지자체"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최소화 하여야"를 "최소화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KS안전색채"를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안전색채"로,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장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시·도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소방청사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소방 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보건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직위로 지정 가능) 한다.

③ 소방청 및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사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소방청 및 시·도의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전문가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① 위원회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제1호 소방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중전의 별표 1) 제1호 소방서의 소방특수차량의 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고가차 2, 소방화학차, 조명배연차 등

별표(중전의 별표 1) 제2호 사무·회의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중전의 별표 1)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당	소방서	2.5㎡ × 1일 근무인원, 부식창고 20㎡, 조리원 1인당 대기실 7㎡	
	안전센터	2.5㎡ × 1일 근무인원, 부식창고 12㎡, 조리원 1인당 대기실 7㎡	

별표(중전의 별표 1) 제2호 중 "건축자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해산) 이 훈령 시행 전에 중전 훈령에 따라 구성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이 훈령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규정</u>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u>청사</u>(이하 ‘소방청사’라 한다)의 부지선정, 건축규모·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훈령</u>----- ----- 「지방자치법」 제126조----- ----- <u>청사</u>----- ----- ----- ----- -----.
제2조(적용범위) 이 <u>규정</u>은 소방청사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및 개축(리모델링), 증축, 재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u>관계법령</u>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소방청사 <u>건축자문위원회</u>의 의결에 의해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u>훈령</u>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 ----- <u>119안전센터</u> (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u>관계 법령</u>----- ---- <u>건축위원회</u>----- -----.
제3조(정의) 이 <u>규정</u>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관리실”이라 <u>함은</u>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u>119감염관리실</u>을 말	제2조(정의) -- <u>훈령</u>----- -----. 1. ----- <u>함은</u>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 <u>공간</u>-----

한다.

2.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

3. “소방안전교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따라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시설을 말한다.

4. “심신안정실”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 치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5.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소방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

2.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

----- 공간-----
-----.

3. -----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4.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

5.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 업무’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조사분석실”이라 함은 「소 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화재조사분석 실을 말한다.	7. ----- 함은 「소 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공간----- -----.
8.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 함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정비· 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 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정비 실을 말한다.	8. -----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 리기준」 별표 7의 기준---- ----- ----- ----- 공간을 을 -----.
9.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 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호 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 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충전실을 말한다.	9. ----- 함 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 별표 7의 기준----- ----- ----- 공간을 -----.
10. “오염구역(HOT ZONE 또 는 RED ZONE)”이라 함은 유 해물질에 노출이 가장 높은 위험구역으로 차고, 현장대응 활동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보	10. -----RED ----- ----- ----- ----- ----- 개인보호장비 ---

관실, 화학·오염물질 등 제독
및 세탁실, 환기시설, 훈련시
설 등을 말한다.

11. “경계구역(TRANSITION Z
ONE 또는 YELLOW ZON
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
하는 공간을 말한다.

12. “안전구역(COLD ZONE 또
는 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
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인접도로) 소방청사 부지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하여 15m 이상
의 도로폭 또는 왕복 3차선 이
상의 도로와 인접하여야 한다.

----- 제독
(除毒) -----
-----.

11. -----YELLOW -----

-----.

12. -----GREEN -----

-----.

13. “자연배기 차고지”란 차고
지의 2면 이상이 개방 가능하
여 매연 및 유해가스의 잔류
가 최소화될 수 있는 차고지
를 말한다.

제5조(인접도로) -----

-----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 -----
-----.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12m 이
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부지매입) ① 선정된 소방
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② (생략)

제8조(청사시설 배치) ① (생략)

② 소방차고와 사무실은 실내온
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
성을 감안하여 일조시간과 일조
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
다.

③·④ (생략)

⑤ 심신안정실은 상담·치유·
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
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
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
려하여 배치한다.

⑥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

----- 12 m -----

-----.

제7조(부지매입) ① 선정된 소방
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청사시설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차고와 사무(행정)공간-----

--- 고려하여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방
대원-----
-----.

⑥ -----

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⑦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 각각 배치한다.

제9조(일반시설 설치) ① 소방청 사시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무실은 출동대 및 부서단위로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③ 출동대기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당직실

----- 배
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 -----

----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
-----.

제9조(일반시설 설치) ① 소방청 사시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무(행정)공간-----

-----.

③ 출동대기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방피복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체력단련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체육실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정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소방청사 내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요건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환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한다.

<신 설>

-----.

-----.

④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

-----.
-----. 이때, 가급적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바닥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⑤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⑥ 심리·고충·비위신고 등 상담·진료(비대면 포함)에 사용하는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소방업무시설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조사분석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을 준 용하여 설치한다.

⑤ 호흡용 공기 충전실 및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은 「호흡보호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 담·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⑦ 소방청사 내 화장실은 남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 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업무시설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 다.

⑤ -----
----- 정비실은 「소방장비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⑥ 소방대원의 훈련을 위한 다
목적훈련탑을 설치한다(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
능). <단서 신설>

⑦ (생 략)

제11조(차고) ① 소방청사의 차고
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와 진·출
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
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② 소방청사의 차고는 119안전
센터·구조대·구급대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
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
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③ 소방청사의 차고는 소방기관
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
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
한다. 이때 대원의 안전과 활동
(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후면은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

⑥ -----
----- 설치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차고) ① 차-----

----- 인접도로의 -----

설치한다.

② 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
정)공간 -----

-----.

③ 차-----

---. --- 소방대원-----

1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④ 소방청사 내 차고시설은 굴절사다리차의 높이(4m)를 고려하여 5m 이상의 층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⑤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상황실) ① 소방서 상황실은 시·도 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장애 발생 시 관할구역의 119신고접수·출동지령·관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상황실에는 전산실과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작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제한구역(보안공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

1 m -----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 -----
--.

④ 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⑤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119종합상황실) ① -----
----- 119종합상황실은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

② 119종합상황실-----

--. --- 119종합상황실-----

는 소방관서에는 별도 공간에 전산실과 작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공조·비상발전시설 등 119종합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를 설치한다.

④ 상황실(전산실 포함)은 환기가 잘되고,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상황실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직원들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기타시설) ① 소방청사에는 직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소방서-----

----.

③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공기조화설비·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 -----
--.

④ 119종합상황실-----

-----.

⑤ 119종합상황실-----

-----.

⑥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시설) ①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② 세탁·건조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반 세탁·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③ (생략)

④ 소방청사 및 민원실 주출입구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는 각각 분리된 환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조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⑥ 소방청사에는 「주차장법」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원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세탁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출입구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

⑤ -----

-----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
----- 공기조화설비가 -----.

⑥ ----- 「주차장법」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
치한다(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
우에는 제외 가능). <단서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건축의 형태) ① 소방청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한다.

② ~ ④ (생략)

⑤ 소방청사는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
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및 해당 시·도 -----
----- 설
치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
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⑦ 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
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
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
도록 한다.

⑧ 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
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의 형태) ① -----

----- 시·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 한다.

제15조(피난동선 설계)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청사 내부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피난동선을 설계한다.

제16조(내·외장재) ① 건물의 외부 마감재는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색채)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사람의 시각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에 대한 이미지 연상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KS안전색채에서 규정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전체 적용비중은 외부면적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제19조(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

제15조(피난동선 설계)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조(내·외장재) ① -----

----- 최소화하여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색채) -----

-----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안전색채-----

----- 30퍼센트-----
-----.

제5장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제19조(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소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본 규정의 개정 및 소방청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구성 및 기능) ①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둔다.

② 소방청의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기능) ① 소방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장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시·도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소방청사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소방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

③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소방
본부는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는자, 보건안전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자, 예산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자, 건축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도
지사가 임명(직위로 지정 가
능) 한다.

③ 소방청 및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사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위원회-----

-----.

⑥ 소방청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청사의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4. (생략)

⑦ 시·도 소방본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방청사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소방청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⑥ 소방청 및 시·도의 위원회-

-----.

<삭 제>

<삭 제>

3. -- 훈령-----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운영) ①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생략)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전문가에게 ----- . <단서 삭제>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 ----- <u>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u> ----- -----.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